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경제와 안보, 기술이 융합된 글로벌 복합위기와 국제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부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고 외교전략정보본부에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을 두며, 국제기구국을 국제기구·원자력국으로, 동북아시아국을 동북·중앙아시아국으로 개편하는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 5.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중남미국·영사안전국·개발협력국·공공문화외교국내 부서 명칭 및 부서간 업무분장 등을 조정하고, 개발협력국 심의관 신설 및 직제상 파견 증원에 따른 외교부 본부 정원을 2명(고위공무원단 1명, 7급 1명) 증원하며, 재외공관 정원을 1명(고위공무원단 1명)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외교부 정원 8명(외무5·6등급 2명, 외무3·4등급 6명)을 증원하고, 기존에 직급 상향 조정한 외교부 정원 1명(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1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행정서기 1명)하고, 새로이 외교부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을 상향 조정(전산주사보 1명)하는 한편, 국립외교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의 직급을 상향(행정주사보 1명,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3. ~ 5.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업무 총괄·조정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

제14조 및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제3항 중 “일본·서남아시아·태평양지역”을 “일본·서남아시아·태평양지역과 한국·일본·중국 3국간 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일본·중국 3국 간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8. 한국·일본·중국 3국 간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업무

제16조의 제목 “(동북아시아국)”을 “(동북·중앙아시아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동북아시아국장” 및 “동북아시아국심의관”을 각각 “동북·중앙아시아국장” 및 “동북·중앙아시아국심의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동북아시아국심의관은 몽골·중국 및 그 지역과 한국·일본·중국 3국간 협력”을 “동북·중앙아시아국심의관은 중국 및 몽골,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동북아시아국”을 “동북·중앙아시아국”으로, “동북아협력과”를 “중앙아시아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중국의 대외정책·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제16조제7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진”을 “증진 및 역사문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국 지역 사정에 관한 조사·연구

3의2. 한국·중국 간 해양 문제에 관한 업무

제1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북아협력과장”을 “중앙아시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몽골·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

항

4.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제18조제4항 중 “남미과·중미카리브과 및 중남미협력과”를 “남미과·중미과 및 카리브·중남미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남미공동시장”을 “남미공동시장, 안데스공동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미카리브과장”을 “중미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테말라·그레나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도미니카연방·멕시코·바베이도스·바하마·벨리즈·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세인트키츠네비스·아이티·앤티가바부다·엘살바도르·온두라스·자메이카·코스타리카·콜롬비아·트리니다드토바고·파나마”를 “과테말라·니카라과·멕시코·베네수엘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코스타리카·콜롬비아·파나마”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미주기구, 중미통합체제, 이베로아메리카공동체, 미주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중남미개발은행, 태평양동맹 등 지역기구 및 지역경제협력체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제1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남미협력과장”을 “카리브·중남미협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을 “가이아나·그레나다·도미니카공화국·도미니카연방·바베이도스·바하마·벨리즈·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아이티·앤티가바부다·자메이카·쿠바·트리니다드토바고 및 그 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미주기구,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 등”을 “카리브공동체, 카리브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등 기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미주개발은행, 중남미개발은행, 태평양동맹,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및 안데스공동체 등 지역경제협력체”를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7.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제19조제4항 중 “서유럽과·중유럽과·유라시아1과 및 유라시아2과”를 “서유럽과·중유럽과·유라시아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교황청·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라트비아·룩셈부르크·모나코·몰타·벨기에·산마리노·스웨덴·스페인·아이슬란드·아일랜드·안도라·에스토니아·영국·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핀란드”를 “교황청·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라트비아·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모나코·몰타·벨기에·산마리노·스웨덴·스페인·아이슬란드·아일랜드·안도라·에스토니아·영국·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핀란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그리스·독일·루마니아·리투아니아·리히텐슈타인·몬테네그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북마케도

니아·불가리아·사이프러스·세르비아·스위스·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알바니아·오스트리아·체코·코소보·크로아티아·튀르키예·폴란드·헝가리”를 “그리스·독일·루마니아·리히텐슈타인·몬테네그로·몰도바·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북마케도니아·불가리아·사이프러스·세르비아·스위스·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알바니아·오스트리아·우크라이나·체코·코소보·크로아티아·튀르키예·폴란드·헝가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라시아1과장”을 “유라시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러시아”를 “러시아·벨라루스·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및 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러시아”를 각각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6.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협력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제20조의2제4항제1호 중 “정책·지침”을 “법령·정책·지침”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5항에 제1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재외국민보호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6. 여행정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8. 국외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홈페이지 등 관리

제21조의 제목 “(국제기구국)”을 “(국제기구·원자력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제기구국장”을 각각 “국제기구·원자력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제기구국”을 “국제기구·원자력국”으로, “국제안보과”를 “원자력외교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안보과장”을 “원자력외교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원자력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2. 양자간 원자력협정의 교섭,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원자력협정의 이행에 관한 외교 업무

4. 주요 국가의 원자력 관련 정책, 법률 및 제3국과의 원자력협정에 관한 조사·연구

5. 원자력협정 등에 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대내외 홍보 업무

6. 원전수출지원공관의 관리·조정

7.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다자간 협력체제에 관한 외교 업무

8. 원자력 국제협력 분야 민간전문가의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 진출 지

원에 관한 업무

9. 핵안보에 관한 외교 업무

10.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대한 국가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11. 지역 원자력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2항에 따라 개발협력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개발협력국심의관으로 하며, 개발협력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개발협력국심의관은 개발협력국 소관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22조제4항(중전의 제2항) 중 “개발전략과 · 개발의제정책과 · 개발협력과”을를 “국제개발의제과 · 개발전략 · 민간협력과 · 개발협력과”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개발전략과장”을 “각 과장”으로, “부이사관 · 서기관”을 “서기관”으로, “9등급으로 하고, 개발의제정책과장 · 개발협력과장 및 다자협력 · 인도지원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을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발의제정책과장”을 “국제개발의제과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발전략과장”을 “개발전략 · 민간협력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1호 중 “문화 분야 공공외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을 “공공외교에 관한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공공외교법」의 이행 총괄

1의3. 공공외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총괄

6의3. 국민외교에 관한 사항

6의5. 청소년 국제교류협력 조정 및 지원

제24조제5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체육”을 “문화 · 체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제6호 중 “디지털 공공외교센터”를 “모파(MOFA) 스튜디오”로 한다.

2. 문화공공외교 사업 관련 재외공관 지원, 관리 및 평가

제27조제4항 중 “유럽경제외교과 ·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및 북미경제외교과”를 “유럽경제외교과 · 동아시아경제외교과 · 북미경제외교과 및 경제안보외교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5호 중 “국가를 포함한”을 “국가와의”로, “소다자 · 다자협의체”를 “양자 및 역내 협의체”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8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및 제8호의2의 업무”를 “업무”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경제안보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급망·에너지·자원(핵심광물 포함)·식량 등 분야에서 경제안보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경제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 조사·연구, 정보 체제 구축 및 관리
 3. 경제안보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의 협력과 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4. 경제안보외교센터의 운영 및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의 관리
 5.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의 관리·조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제28조제2항 중 “에너지과학외교과·국제기술규범과·기후변화외교과”를 “국제과학기술규범과·기후변화외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에너지과학외교과장 및 녹색환경외교과장”을 “녹색환경외교과장”으로, “국제기술규범과장”을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조 제4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기술규범과장”을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6호”를 “제6호까지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로 한다.

1의2. 과학기술·우주 및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

의 수립·시행 및 총합·조정

1의3. 과학기술거점공관의 관리·조정

1의4. 외교부의 과학기술 관련 외교자문위원회의 관리·운영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국제기구·다자협의체와의 협력

5. 에너지 관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외교적 교섭

9. 기후에너지협력센터의 운영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8조제6항(중전의 제7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13호까지”를 “제13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으로 한다.

3. 물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및 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외교적 지원 포함)

8의2. 환경 관련 양자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8의3. 환경 관련 양자조약의 체결교섭 및 이행과 관련한 국가 간의 협력

제28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4등급으로 한다.

제2장에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국제사이버협력대사)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9조의3(외교전략기획국) ① 외교전략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외교전략기획국에 외교정책기획과 및 인태전략과를 둔다

③ 외교정책기획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
은 9등급으로 하고, 인태전략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
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④ 외교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잠재 기회·위험요소 식별을 통한 외교정책 기획
2. 외교정책의 종합 및 조정
3. 연두업무보고·국회업무보고 등 주요 외교정책 보고 및 대외 발표
자료 총괄
4.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 외국과의 정책기획협의회 운영
6. 국내외 외교정책 연구기관, 국제문제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7. 외교백서 발간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인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외교전략의 수립 및 총괄
2. 국가안보전략 관련 자료 작성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3. 인태전략 이행업무 조정·총괄
4. 인태지역 역내외 주요국 및 지역기구와의 전략 협의 및 협의회 운
영
5. 인태전략 관련 학술 교류 및 대내외 홍보 업무
6. 인태전략 관련 대내외 동향 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제29조의4(외교정보기획국) ① 외교정보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외교전략기획국에 외교정보1과 및 외교정보2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
로 한다.

④ 외교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교정보사무 기획 및 대내외 조정
2. 정보 수집 총괄 및 조정(조사용역, 통계분석, 해외 여론조사 포함)
3. 정보공개·교육·보안
4. 데이터베이스 구축·기술지원
5. 그 밖에 외교정보 업무 관련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
항

⑤ 외교정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정보 분석
2. 이슈정보 분석
3. 정보 검증
4. 데이터베이스 관리
5. 외교정보 조사 및 분석 관련 국내 및 외국과의 협력

제29조의5(한반도정책국) ① 한반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한반도정책국에 북핵정책과·대북정책협력과 및 한반도미래정책
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
급으로 한다.

④ 북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관한 전략·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
괄·조정
2.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대응과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 및 국제 공
조
3. 북한 핵 문제 관련 협상 대책과 및 전략의 수립 및 교섭
4.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 국가들과의 협의
5. 대북한 독자 제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국제공조
6.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국제 공조

7. 북핵문제 관련 주요 현안 및 동향 분석

8. 북한 핵문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부처간 협조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대북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관계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한 외교부 입장 수립 및 대응
3. 대북정책 관련 외교적 협력

4. 대북정책 관련 외교적 사항에 대한 홍보 및 부처간 협조

5. 북한 관련 해외정보 수집 및 정세 분석 업무

6. 북한인권 관련 외교정책(유엔 등 국제기구 관련 정책은 제외한다)의
수립·시행

⑥ 한반도미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지원 업무
2. 통일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 통일 관련 외교적 사항에 대한 홍보 및 부처간 협조
4. 한반도 유사시 외교적 대비 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5.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교섭
6. 한반도 정전협정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조정 및 교섭
7.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주변 국가 간의 지역 정치협력 및 다자안보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기획·조정

제29조의6(국제안보국) ① 국제안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안보국에 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군축비확산과 및 수출통제·제재과를 둔다.

③ 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며, 군축비확산과장·수출통제·제재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안보 문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국제안보 분야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3.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업무
4. 다자간 안보협력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안보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5. 사이버 안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6. 사이버 안보 관련 양자·다자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7. 테러리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8. 테러리즘 관련 양자·다자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9.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외교업무
10. 해적 퇴치 등 신안보 문제에 관한 외교업무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군축비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축·비확산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다자간 군축·군비통제 및 비확산에 관한 사항

3. 핵 군축·군비통제·비확산에 관한 사항

4. 화학무기금지기구에 관한 사항

5. 화학 및 생물무기·미사일·지뢰·재래식 무기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우주 안보에 관한 사항

7. 유엔 우주사무소(UNOOSA) 및 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 관련 외교 업무 총괄

8. 자율살상무기를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군축·비확산 분야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관련 양자·다자간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조사·연구 업무

⑥ 수출통제·제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엔 비확산 제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유엔 비확산 제재 이행에 관한 업무

3. 다자간 반확산에 관한 사항

4. 유엔 비확산 제재 및 반확산 관련 양자·다자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5. 유엔 비확산 제재 및 반확산 관련 대내외 이해 제고를 위한 업무

6. 유엔 비확산 제재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 등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7. 양자 수출통제·제재 관련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8.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9. 수출통제 및 제재·반확산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

별표 1 중 총계 “938”을 “94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28”을 “229”로 하며, 전산주사보 2 다음에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출입국관리주사보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4”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3”를 삭제하며, 외무공무원 계 “702”를 “703”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42”를 “43”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940”을 “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28”을 “229”로 하며, 전산주사보 “2”를 “3”으로 하고, 전산주사보 3 다음에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출입국관리주사보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5”를 신설하며,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5”를 삭제하고, 행정서기 “27”을 “28”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20”을 “19”로 하고, 외무공무원 계 “704”를 “713”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42”를 “43”으로 하고,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16”을 “118”로 하며,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115”를 “121”로 한다.

별표 2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다음에 “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

사 2”를 신설하고, “사서주사 2”를 삭제한다.

별표 2의2 서기관 1 다음에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를 신설하고, “사서사무관 1”를 삭제하며, 행정주사 1 다음에 “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를 신설하고, “사서주사 2”를 삭제하며, 행정주사보 “3”을 “4”로 하고, 행정서기 “5”를 “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외무공무원 계 “1,492”를 각각 “1,491”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232”를 “231”로 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아시아태평양양국 아태지역협력과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동북·중앙아시아국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3) 동북·중앙아시아국 심의관	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4) 아세안국 동남아2과	6명 (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5) 국제안보국 수출통제·제재과	4명 (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6) 동북·중앙아시아국 중앙아시아과	2명 (8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2024년 9월 30일까지
7) 아프리카중동국 아프리카2과	3명 (8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2024년 9월 30일까지

	9급 1명) 5명	
8) 개발협력국 개발전략· 민간협력과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9)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 제과학기술규범과	0명	2025년 9월 30일까지
10) 개발협력국 심의관	0명	2027년 3월 31일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시행일)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룩셈부르크대공국대한민국대사관, 주리투아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에스토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외교전략정보본부장”으로 하고,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중전의 외교부령 제11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

조제1항에 따른 상향 조정된 직급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급이 하향 조정된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의 직급이 상향 조정된 정원 4명(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5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명, 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1명,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1명, 5등급·6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6년 7월 14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4명(행정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3등급·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전산주사보 1명)은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5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1명(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은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5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의 정원 1명(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으로 보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의2의 정원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6년 7월 14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7월 1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2

의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 정원 2명(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 공무원 2명)은 2027년 5월 27일까지 존속하며, 정원 6명(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6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 ⑨ (생략)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⑩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0의2.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업무 총괄·조정</u>
11. ~ 17. (생략)	11. ~ 17. (현행과 같음)
⑪ ~ ⑮ (생략)	⑪ ~ ⑮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외교전략기획관) ① 외교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u><삭 제></u>
② 외교전략기획관 밑에 정책기획담당관 및 전략조정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정책기획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전략조정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	

등급으로 한다.

④ 정책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외교전략기획관을 보좌한다.

1. 연간 외교정책의 기획·종합 및 조정
2. 연두업무보고·국회업무보고 등 주요 외교정책 보고
3. 중장기 외교전략의 수립 및 총괄
4. 외교정책에 대한 연설문 및 강연자료 작성
5. 외교백서 발간
6.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7. 외국과의 정책기획협의회 운영
8.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전략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외교전략기획관을 보좌한다.

1. 정보 수집 및 정세 분석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주요 외교사안 및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 및 평가

3. 국내외 외교정책 연구기관, 국제문제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4. 국가안보전략 관련 자료 작성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5. 삭제

6. 삭제

7. 주요국 관련 외교전략 조정

8. 주요국 관련 긴급 외교현안 대응

9. 주요국 관련 동향조사 및 정보 분석

제10조(다자외교조정관) 다자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14조(국제안보대사) 국제안보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4조의2(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①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

제10조(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삭 제>

<삭 제>

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밑에 원자력외교담당관·군축비확산담당관 및 수출통제·제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각 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원자력외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을 보좌한다.

1. 원자력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2. 양자간 원자력협정의 교섭,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원자력협정의 이행에 관한 외교 업무
4. 주요 국가의 원자력·비확산 정책, 법률 및 제3국과의 원자력협정에 관한 조사·연구
5. 원자력협정 등에 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대내외 홍보 업무
6.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원

자력 협력체제에 관한 외교 업무

7. 핵안보 및 다자간 핵연료주기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8.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대한 국가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9. 원자력 국제협력 분야 민간 전문가의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업무

10.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라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등 지역 원자력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⑤ 군축비확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을 보좌한다.

1. 군축·비확산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다자간 군축·군비통제 및 비확산에 관한 사항
3. 핵 군축·군비통제·비확산에 관한 사항
4. 화학무기금지기구에 관한 사항

5. 화학 및 생물무기·미사일·지뢰·재래식무기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6.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우주 안보에 관한 사항
 7. 유엔 우주사무소(UNOOSA) 및 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 관련 외교 업무 총괄
 8. 자율살상무기를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군축·비확산 분야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관련 양자·다자간 협력, 국제 기구와의 협력 및 조사·연구 업무
- ⑥ 수출통제·제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을 보좌한다.
1. 유엔 비확산 제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유엔 비확산 제재 이행에 관한 업무
 3. 다자간 반확산에 관한 사항
 4. 유엔 비확산 제재 및 반확산

- 관련 양자·다자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5. 유엔 비확산 제재 및 반확산 관련 대내외 이해 제고를 위한 업무
 6. 유엔 비확산 제재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 등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7. 양자 수출통제·제재 관련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8.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9. 수출통제 및 제재·반확산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
- 제15조(아시아태평양국) ①·② (생략)
- ③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은 일본·서남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와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④ ~ ⑦ (생략)
- ⑧ 아태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5조(아시아태평양국)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일본·서남아시아·태평양지역과 한국·일본·중국 3국간 협력-----.
- ④ ~ ⑦ (현행과 같음)
- ⑧ -----.

1. 2. 삭제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한국·일본·중국 3국 간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조정
<신설>	8. 한국·일본·중국 3국 간의 협업체 운영에 관한 업무
제16조(동북아시아국) ① 동북아 시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 로 한다.	제16조(동북·중앙아시아국) ① 동북·중앙아시아국장----- ----- ----- -----.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동북 아시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은 동북아시아국심의관으로 하 며, 동북아시아국심의관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 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 동북 ----- 동북·중앙아시아국심의관 으로 하며, 동북·중앙아시아국 심의관----- -----.
③ 동북아시아국심의관은 몽골 · 중국 및 그 지역과 한국·일 본·중국 3국간 협력에 관한 외 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③ 동북·중앙아시아국심의관 은 중국 및 몽골, 중앙아시아 지 역----- ----- -----.

④ 동북아시아국에 동북아1과 · 동북아2과 및 동북아협력과 를 둔다.	④ 동북·중앙아시아국----- ----- 중앙아시아과-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동북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2의2. 중국의 대외정책·대외관 계에 관한 업무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⑦ 동북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중국 지역 사정에 관한 조 사·연구
2. 한국·중국 간 우호 증진에 관한 업무	2. ----- 증진 및 역사문제----- -----
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 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동북아역사재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 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 -----
<신설>	3의2. 한국·중국 간 해양 문제 에 관한 업무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⑧ 동북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	⑧ 중앙아시아과장-----

을 분장한다.	-----.
1. <u>중국 지역 사정에 관한 조사</u> <u>· 연구</u>	1. <u>몽골·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u> 및 <u>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2. <u>중국의 대외정책·대외관계에 관한 업무</u>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u>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u>
3. <u>몽골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u>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u>
4. <u>몽골 지역 사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u>	4. <u>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5. <u>한국·일본·중국 3국 간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삭 제>
6. <u>한국·일본·중국 3국 간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업무</u>	<삭 제>
7. <u>동북아 지역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삭 제>
제18조(중남미국) ① ~ ③ (생략)	제18조(중남미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중남미국에 남미과·중미과</u>	④ ----- <u>남미과·중미과</u>

<u>리브과 및 중남미협력과를 둔다.</u>	<u>및 카리브·중남미협력과</u>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u>남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⑥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남미공동시장 등 남미지역 기구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u>	4. <u>남미공동시장, 안데스공동체</u> -----
5. 6. (생략)	5. 6. (현행과 같음)
⑦ <u>중미카리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⑦ <u>중미과장</u> -----
1. <u>과테말라·그레나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도미니카연방·멕시코·바베이도스·바하마·벨리즈·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세인트키츠네비스·아이티·앤티가바부다·엘살바도르·온두라스·자메이카·코스타리카·콜롬비아·트리니다드토바고·파나마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1. <u>과테말라·니카라과·멕시코·베네수엘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코스타리카·콜롬비아·파나마</u>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4. <u>중미통합체제, 카리브공동체,</u>	4. <u>미주기구, 중미통합체제, 이</u>

<u>카리브국가연합 등 중미카리브지역 기구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u>	<u>베로아메리카공동체, 미주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중남미개발은행, 태평양동맹 등 지역기구 및 지역경제협력체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⑧ <u>중남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⑧ <u>카리브·중남미협력과장</u> -----.
1. <u>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1. <u>가이아나·그레나다·도미니카공화국·도미니카연방·바베이도스·바하마·벨리즈·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세인트키츠네비스·수리남·아이티·앤티가바부다·자메이카·쿠바·트리니다드토바고 및 그 지역</u> -----
<u>1의2. 가이아나·베네수엘라·수리남·쿠바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u>1의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미주기구,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 등 지역기구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u>	3. <u>카리브공동체, 카리브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등 기타</u> -----

4. <u>미주개발은행, 중남미개발은행, 태평양동맹,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및 안테스공동체 등 지역경제협력체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u>	4. <u>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u> -----
5. 6. (생략)	5. 6. (현행과 같음)
7. <u>제1호의2에 따른 각 국가·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연구 및 협력 방안 연구·시행</u>	7. <u>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u>
제19조(유럽국) ① ~ ③ (생략)	제19조(유럽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유럽국에 <u>서유럽과·중유럽과·유라시아1과 및 유라시아2과</u> 를 둔다.	④ ----- <u>서유럽과·중유럽과·유라시아과</u>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u>서유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⑥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교황청·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라트비아·룩셈부르크·모나코·몰타·벨기에·산마리노·스웨덴·스페인·아이슬란드·아일랜드·안도라·에스토니아·영국·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핀란드 및 그 지역에 관한 외</u>	3. <u>교황청·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라트비아·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모나코·몰타·벨기에·산마리노·스웨덴·스페인·아이슬란드·아일랜드·안도라·에스토니아·영국·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핀란드</u> -----

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 ·조정	----- ----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⑦ 중유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u>그리스·독일·루마니아·리 투아니아·리히텐슈타인·몬 테네그로·보스니아헤르체고 비나·북마케도니아·불가리 아·사이프러스·세르비아· 스위스·슬로바키아·슬로베 니아·알바니아·오스트리아 ·체코·코소보·크로아티아 ·튀르키예·폴란드·헝가리</u>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 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 <u>그리스·독일·루마니아·리 히텐슈타인·몬테네그로·몰 도바·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불가리아· 사이프러스·세르비아·스위 스·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알바니아·오스트리아·우 크라이나·체코·코소보·크 로아티아·튀르키예·폴란드 ·헝가리</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⑧ <u>유라시아1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u>	⑧ <u>유라시아과장</u> ----- -----.
1. <u>러시아</u> 지역에 관한 외교정 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 정	1. <u>러시아·벨라루스·아르메니 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및 그</u>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4. <u>러시아</u> 및 그 지역 사정에 대 한 조사·연구	4. <u>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u> --- -----

5. <u>러시아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u> <u><신설></u>	5. <u>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u> ----- -----
⑨ <u>유라시아2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u>	6. <u>독립국가연합(CIS) 지역 협 력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 립·시행 및 총괄·조정</u> <u><삭제></u>
1. <u>몰도바·벨라루스·아르메니 아·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 스탄·우크라이나·조지아·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 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2. <u>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 연구</u>	
3. <u>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u>	
4. <u>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CICA),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협력기구에 관한 외교정 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 정</u>	
제20조의2(영사안전국) ① ~ ③	제20조의2(영사안전국) ① ~ ③

(생략) ④ 영사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사 관련 <u>정책·지침의 수립·총괄 및 조정</u> 2. ~ 5. (생략) 6. <u>재외국민보호 법령·정책·제도에 관한 사항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7. (생략) 8. <u>여행정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u> 9.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에 <u>다른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u> 10.·11. (생략) ⑤ 재외국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u><신설></u> 2. ~ 5. (생략) <u><신설></u> <u><신설></u>	(현행과 같음) ④ ----- ----- 1. ----- <u>법령·정책·지침</u> ----- 2. ~ 5. (현행과 같음) <u><삭제></u> 7. (현행과 같음) <u><삭제></u> 9. <u>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u> 10.·11.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1의2. <u>재외국민보호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2. ~ 5. (현행과 같음) 6. <u>여행정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u> 7.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에	<u><신설></u> ⑥·⑦ (생략) 제21조(국제기구국) ① <u>국제기구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② <u>국제기구국장 밑에 협력관 1명을 둔다.</u> ③·④ (생략) ⑤ <u>국제기구국에 유엔과·인권사회과 및 국제안보과를 둔다.</u> ⑥ ~ ⑨ (생략) ⑩ <u>국제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국제안보 문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2. <u>다자간 안보협력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안보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u>	<u>다른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u> 8. <u>국외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홈페이지 등 관리</u> ⑥·⑦ (현행과 같음) 제21조(국제기구·원자력국) ① <u>국제기구·원자력국장-----</u> ----- -----. ② <u>국제기구·원자력국장 -----</u>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국제기구·원자력국-----원자력외교과-----</u> ⑥ ~ ⑨ (현행과 같음) ⑩ <u>원자력외교과장-----</u> -----. 1. <u>원자력 원자력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u> 2. <u>양자간 원자력협정의 교섭,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u>
--	--	--	---

정	
3.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국 내외 기관과의 협력 업무	3. 원자력협정의 이행에 관한 외교 업무
4. 테러리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4. 주요 국가의 원자력 관련 정 책, 법률 및 제3국과의 원자력 협정에 관한 조사·연구
5. 대 테러 국제협력 관련 외교 업무	5. 원자력협정 등에 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대내외 홍보 업 무
6. 테러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업무	6. 원전수출지원공관의 관리· 조정
7.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외교 업무	7.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 된 국제기구 및 다자간 협력 체제에 관한 외교 업무
8. 국제안보 분야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8. 원자력 국제협력 분야 민간 전문가의 원자력 관련 국제기 구 진출 지원에 관한 업무
9. 사이버 안보, 해적 퇴치 등 신안보 문제에 관한 외교업무	9. 핵안보에 관한 외교 업무
<신 설>	10.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에 대한 국가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신 설>	11. 지역 원자력 협력에 관한 외 교 업무
제22조(개발협력국) ① (생 략)	제22조(개발협력국) ① (현행과

<신 설>	같음)
<신 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26조제2항에 따라 개발 협력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개발협력국심의관으로 하며, 개 발협력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 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한다.
② 개발협력국에 개발전략과· 개발의제정책과·개발협력과 및 다자협력·인도지원과를 둔 다.	③ 개발협력국심의관은 개발협 력국 소관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 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③ 개발전략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서기관으로 보 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 등급으로 하고, 개발의제정책과 장·개발협력과장 및 다자협력 ·인도지원과장은 외무공무원 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 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 국제개발의제 과·개발전략·민간협력과·개 발협력과----- -----. ⑤ 각 과장----- --- 서기관----- ----- ----- 각 각 ----- ----- ----- ----- -----.

④ 개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개발전략·민간협력과장-----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⑤ 개발의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국제개발의제과장-----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⑧·⑨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24조(공공문화외교국) ① ~ ③ (생 략)	제24조(공공문화외교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외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문화 분야 공공외교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 공공외교에 관한 정책-----
1의2. 「공공외교법」의 운영 및 제도 개선	1의2. 「공공외교법」의 이행 총괄
<신 설>	1의3. 공공외교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 운영 총괄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6의2. 삭 제	6의3. 국민외교에 관한 사항
6의3. 공공외교 홍보사절에 관한 업무	6의4. (현행과 같음)
6의4. (생 략)	6의5. 청소년 국제교류협력 조정 및 지원
<신 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⑤ 유네스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국외 문화재 환수·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8. --- 국가유산 -----
9.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⑥ 문화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체육 분야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 문화·체육 -----
2. 청소년 국제교류협력 조정 및 지원	2. 문화공공외교 사업 관련 재외공관 지원, 관리 및 평가
3. 삭 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업무 총괄·조정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8. ----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
⑦ 정책공공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u>국민외교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u>	<삭 제>
8. <u>국민외교센터 운영 등 국민 외교 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u>	<삭 제>
⑧ 디지털공공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u>디지털 공공외교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u>	6. <u>모파(MOFA) 스튜디오</u> ----- -----
제27조(양자경제외교국) ① ~ ③ (생 략)	제27조(양자경제외교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양자경제외교국에 <u>유럽경제외교과 ·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및 북미경제외교과</u> 를 둔다.	④ ----- <u>유럽경제외교과 · 동아시아경제외교과 · 북미경제외교과 및 경제안보외교과</u>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에 규정된 각 <u>국가</u> 를 포함 <u>공급망 관련 소다자 · 다자협의체의 운영 및 대외협력</u> 에 관한 사항	5. ----- <u>국가와의 -</u> ----- <u>양자 및 역</u> <u>내 협의체</u> -----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⑧ 북미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8의2. <u>경제안보외교센터의 운영</u>	<삭 제>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9. ----- 업무-- ----- -----
<신 설>	⑨ <u>경제안보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공급망 · 에너지 · 자원(핵심 광물 포함) · 식량 등 분야에</u> 서 <u>경제안보에 대한 외교정책</u> 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
	2. <u>경제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 조사 · 연구, 정보 체제 구축 및 관리</u>
	3. <u>경제안보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의 협력과 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u>
	4. <u>경제안보외교센터의 운영 및 재외공관 경제안보전문관의 관리</u>
	5. <u>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u> 관의 관리 · 조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28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①	제28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①

(생략)

② 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에너지과학외교과·국제기술규범과·기후변화외교과 및 녹색환경외교과를 둔다.

③ 에너지과학외교과장 및 녹색환경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고, 국제기술규범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며, 기후변화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④ 에너지과학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자원 업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1의2. 과학기술·우주 및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현행과 같음)

② ----- 국제과학기술규범과·기후변화외교과 -----
-----.

③ 녹색환경외교과장-----

-----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

-----.

<삭 제>

종합·조정

1의3. 삭제

2. 에너지·자원에 관련된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의 협력과 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3. 신재생에너지·청정에너지 관련 분야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4. 에너지 관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외교적 교섭

4의2. 물·식량안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4의3. 물·식량안보 관련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4의4. 에너지·자원 및 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외교적 지원

5.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의 관리·조정

6. 주요 국가의 에너지·자원 관련 정보체제 구축 및 관리

7. 에너지·자원에 관한 정보의

<u>수집 및 조사·연구</u> 8. <u>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의 운영</u> 9. <u>원전수출지원공관의 관리·조정</u> 10. <u>과학기술거점공관의 관리·조정</u> 11. <u>외교부의 과학기술 관련 외교자문위원회의 관리·운영</u> 12. <u>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u> 13. <u>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⑤ <u>국제기술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생략) <신설> <신설> <신설> 2. ~ 6. (생략)	④ <u>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u> -----. 1. (현행과 같음) 1의2. <u>과학기술·우주 및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u> 1의3. <u>과학기술거점공관의 관리·조정</u> 1의4. <u>외교부의 과학기술 관련 외교자문위원회의 관리·운영</u> 2. ~ 6. (현행과 같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⑥ <u>기후변화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3. (생략) 4. <u>환경 관련 양자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5. <u>환경 관련 양자조약의 체결 교섭 및 이행과 관련한 국가간의 협력</u> 6. ~ 8. (생략) <신설> 10. ~ 12. (생략) <신설> ⑦ <u>녹색환경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2. (생략) 3. <u>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4. ~ 8. (생략)	7. ----- 제6호까지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 -----. ⑤ ----- -----. 1. ~ 3. (현행과 같음) 4. <u>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국제기구·다자협약체와의 협력</u> 5. <u>에너지 관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외교적 교섭</u> 6. ~ 8. (현행과 같음) 9. <u>기후에너지협력센터의 운영</u> 10. ~ 12. (현행과 같음) 13. <u>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⑥ ----- -----. 1.·2. (현행과 같음) 3. <u>물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및 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외교적 지원 포함)</u> 4. ~ 8. (현행과 같음)
---	--	---	--

<신 설>	8의2. 환경 관련 양자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신 설>	8의3. 환경 관련 양자조약의 체결교섭 및 이행과 관련한 국가 간의 협력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14. ----- 제13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			
제29조(한반도평화교섭본부) 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4등급으로 한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에 따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북핵외교기획단장 및 평화외교기획단장으로 하고, 북핵외교기획단장 및 평화외교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	제29조(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4등급으로 한다.		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3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 북핵협상과·북핵정책과·평화체제과 및 대북정책협력과를 둔다. ⑥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⑦ 북핵협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6자회담 등 북한 핵문제 관련 협상 대책 및 전략 수립 2. 6자회담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관련 업무 3. 6자회담 일본·북한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관련 업무 4. 북한 핵문제 관련 중국·일본·러시아와의 양자 협의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조 관련 업무	

5.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 현안
및 국제 동향 분석

6. 그 밖에 북핵외교기획 업무
관련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⑧ 북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정책
및 기본 구상의 수립

2. 6자회담 본회담 관련 업무

3. 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 관
련 업무

4. 6자회담 미국·북한 관계정
상화 실무그룹 관련 업무

5.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북
한과의 양자 협의 및 유엔·
국제원자력기구와 미주·유럽
(유럽연합을 포함한다)·아프
리카·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협조 관련 업무

6. 북한 핵문제 관련 사항에 대
한 홍보 및 협조

⑨ 평화체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외
교정책의 수립·조정과 교섭

2.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협상
대책의 수립 및 주요국과의
협의

3.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협조

4.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정전
협정, 평화협정,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에 대한 외교 업무

5.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사항
에 대한 홍보 및 이를 위한 국
회와 국내외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

6. 6자회담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관련 업무 등 동북
아평화안보체제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주요국과의 협의
및 국회와 국내외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

7.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주변
국가 간의 지역 정치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기획·조정

8. 통일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
립·시행 및 총괄·조정

9. 통일에 관한 외교정책 관련
국회 및 부처간 협조 업무

10. 유사시 외교적 대비 계획 수

립 및 총괄·조정

11. 그 밖에 평화외교기획 업무
관련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⑩ 대북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남북관계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북한 정세 관련 국제 동향 조
사·분석

3. 대북지원 및 경협사업, 인도
적 협력 관련 외교 업무

4. 정치·군사 분야 등 각종 남
북회담 관련 외교정책 업무

5.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한
외교부 입장 수립 및 대응

6. 대북정책 관련 외교적 협력

7.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정책 수립 및 지원 업무

8. 남북관계에 관한 외교정책
관련 국회 및 부처 간 협조 업
무

<신 설>

제29조의2(국제사이버협력대사)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
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

<신 설>

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9조의3(외교전략기획국) ① 외
교전략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
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한다.

② 외교전략기획국에 외교정책
기획과 및 인태전략과를 둔다

③ 외교정책기획과장은 외무공
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
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인태
전략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
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
등급으로 한다.

④ 외교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잠재 기회·위험요소 식별을
통한 외교정책 기획

2. 외교정책의 종합 및 조정

3. 연두업무보고·국회업무보고
등 주요 외교정책 보고 및 대
외 발표 자료 총괄

4.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 외국과의 정책기획협의회 운
영

6. 국내외 외교정책 연구기관,

<신 설>

국제문제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7. 외교백서 발간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인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외교전략의 수립 및
총괄
2. 국가안보전략 관련 자료 작
성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3. 인태전략 이행업무 조정·총
괄
4. 인태지역 역내외 주요국 및
지역기구와의 전략 협의 및
협의회 운영
5. 인태전략 관련 학술 교류 및
대내외 홍보 업무
6. 인태전략 관련 대내외 동향
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제29조의4(외교정보기획국) ① 외
교정보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
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한다.

② 외교전략기획국에 외교정보

<신 설>

1과 및 외교정보2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④ 외교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외교정보사무 기획 및 대내
외 조정
2. 정보 수집 총괄 및 조정(조사
용역, 통계분석, 해외 여론조
사 포함)
3. 정보공개·교육·보안
4. 데이터베이스 구축·기술지원
5. 그 밖에 외교정보 업무 관련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
니하는 사항

⑤ 외교정보2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지역정보 분석
2. 이슈정보 분석
3. 정보 검증
4. 데이터베이스 관리
5. 외교정보 조사 및 분석 관련
국내 및 외국과의 협력

제29조의5(한반도정책국) ① 한반
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한반도정책국에 북핵정책과 · 대북정책협력과 및 한반도미래정책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북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관한 전략 · 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
2. 북한 핵 · 대량살상무기 대응과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 및 국제 공조
3. 북한 핵 문제 관련 협상 대책과 및 전략의 수립 및 교섭
4.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 국가들과의 협의
5. 대북한 독자 제재 관련 정책의 수립 · 시행 및 국제공조
6.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국제 공조

7. 북핵문제 관련 주요 현안 및 동향 분석

8. 북한 핵문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부처간 협조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대북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관계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
 2.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한 외교부 입장 수립 및 대응
 3. 대북정책 관련 외교적 협력
 4. 대북정책 관련 외교적 사항에 대한 홍보 및 부처간 협조
 5. 북한 관련 해외정보 수집 및 정세 분석 업무
 6. 북한인권 관련 외교정책(유엔 등 국제기구 관련 정책은 제외한다)의 수립 · 시행
- ⑥ 한반도미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지원 업무
 2. 통일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

<신 설>

- 립·시행 및 총괄·조정
3. 통일 관련 외교적 사항에 대한 홍보 및 부처간 협조
4. 한반도 유사시 외교적 대비 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5.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및 교섭
6. 한반도 정전협정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조정 및 교섭
7.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주변 국가 간의 지역 정치협력 및 다자안보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기획·조정
- 제29조의6(국제안보국) ① 국제안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국제안보국에 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군축비확산과 및 수출통제·제재과를 둔다.
- ③ 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 하며, 군축비확산과장·수출통제·제재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 ④ 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안보 문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국제안보 분야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3.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업무
 4. 다자간 안보협력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안보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5. 사이버 안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6. 사이버 안보 관련 양자·다자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7. 테러리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8. 테러리즘 관련 양자·다자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9.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외교 업무
 10. 해적 퇴치 등 신안보 문제에 관한 외교업무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군축비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축·비확산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다자간 군축·군비통제 및 비확산에 관한 사항
 3. 핵 군축·군비통제·비확산에 관한 사항
 4. 화학무기금지기구에 관한 사항
 5. 화학 및 생물무기·미사일·지뢰·재래식 무기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6.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우주 안보에 관한 사항

7. 유엔 우주사무소(UNOOSA) 및 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 관련 외교 업무 총괄
 8. 자율살상무기를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군축·비확산 분야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관련 양자·다자간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조사·연구 업무
- ⑥ 수출통제·제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엔 비확산 제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유엔 비확산 제재 이행에 관한 업무
 3. 다자간 반확산에 관한 사항
 4. 유엔 비확산 제재 및 반확산 관련 양자·다자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5. 유엔 비확산 제재 및 반확산 관련 대내외 이해 제고를 위한 업무
 6. 유엔 비확산 제재 관련 안전

	<u>보장이사회의 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 등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u>
7.	<u>양자 수출통제·제재 관련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u>
8.	<u>다자간 수출통제체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9.	<u>수출통제 및 제재·반확산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u>

신·구정원대비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38	940	+2
일반직 계	228	229	+1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출입국관리주사보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신 설>	4	+4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3	<삭 제>	-3
외무공무원 계	702	703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u>42</u>	<u>43</u>	+1
•	•	•	
•	•	•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940</u>	<u>950</u>	+10
•	•	•	
•	•	•	
일반직 계	<u>228</u>	<u>229</u>	+1
•	•	•	
•	•	•	
전산주사보	<u>2</u>	<u>3</u>	+1
<u>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 주사보·출입국관리주사보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u>	<u><신 설></u>	<u>5</u>	+5
<u>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 주사보 또는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u>	<u>5</u>	<u><삭 제></u>	-5
•	•	•	
행정서기	<u>27</u>	<u>28</u>	+1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u>20</u>	<u>19</u>	-1
•	•	•	

·	·	·	
외무공무원 계	<u>704</u>	<u>713</u>	+9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u>42</u>	<u>43</u>	+1
·	·	·	
·	·	·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u>116</u>	<u>118</u>	+2
·	·	·	
·	·	·	
3 등급 · 4 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 공무원	<u>31</u>	<u>37</u>	+6
·	·	·	
·	·	·	

[별표 2]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u>	<u><신 설></u>	<u>2</u>	+2
<u>사서주사</u>	<u>2</u>	<u><삭 제></u>	-2
·	·	·	
·	·	·	

[별표 2의2]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신 설>	2	+2
사서사무관	1	<삭 제>	-1
•	•	•	
•	•	•	
사서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신 설>	1	+1
사서주사	2	<삭 제>	-2
•	•	•	
행정주사보	3	4	+1
•	•	•	
행정서기	5	4	-1
•	•	•	
•	•	•	

[별표 3]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1,492	1,491	-1
외무공무원 계	1,492	1,491	-1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232	231	-1
•	•	•	
•	•	•	